

분쟁광물규제법안

-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KPMG LLP/삼성KPMG 경제연구원

September 2011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Jim Low

Americas Center of Excellence
Partner, KPMG LLP

Tel: + 1 212 872 3205
jhlw@kpmg.com

박재우

경제연구원
Partner, 삼정KPMG

Tel: + 82 2 2112 0455
Fax: + 82 2 2112 7441
jaewoopark@kr.kpmg.com

윤성빈

경제연구원
Senior Manager, 삼정KPMG

Tel: + 82 2 2112 7448
Fax: + 82 2 2112 7441
sungbinyoon@kr.kpmg.com

이파라

경제연구원
Analyst, 삼정KPMG

Tel: + 82 2 2112 0449
Fax: + 82 2 2112 7441
farrahlee@kr.kpmg.com

	Page
Executive Summary	3
법안 내용 및 의무사항	4
■ 서론	4
■ 적용 범위 및 영향	5
■ 의무 사항	5
■ 진행 일정	6
■ 연방 및 주정부의 대응	6
산업계의 대응과제	6
■ 법안 시행의 어려움	6
■ 개별기업의 대응	7
■ 산업기반의 솔루션	9
KPMG's Approach	10
■ 분쟁광물규제 대응 프로세스	10
장기적 비용과 편익	11
■ 기업들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11
■ 공급사슬 실사를 통해 기대되는 부가적 편익	12
결론	12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관계회사(이하 삼정)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시장, 회사,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삼정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삼정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정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삼정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2010년 7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분쟁광물” 규제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전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 조항의 범위 및 영향, 그리고 보고 의무 사항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1502조에 포함된 “분쟁광물” 조항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2년 시행 예정) “분쟁광물”은 분쟁국이나 환경 파괴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미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해 9개국에서 생산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개 광물을 ‘분쟁광물’로 지정했다. 이들 광물이 콩고 무장세력의 자금원으로 활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 조항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수많은 벤더와 위탁 제조사 및 전략적 파트너들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 제품에 쓰인 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소수 기업들이 동 법안 제정 이전부터 공급사슬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분쟁광물 규제 법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PMG는 분쟁광물 원산지 실사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했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전자산업 관련 2대 단체인 전자산업시민연대(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가 승인한 프로그램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동 법안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공급사슬 실사 프로그램을 수용한 단체들은 공급사슬 투명성을 포함해 법안 준수 이상의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I. 법안 내용 및 의무 사항

서론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DRC)이나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금과 텅스텐, 주석, 탄탈륨 등의 특정 광물을 일컫는 용어이다.

UN은 지난 10년간 콩고민주공화국 내 잔악행위를 범하고 있는 무장반군이 분쟁광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발표했다. Enough Project나 Global Witness와 같은 NGO들도 의회와 전자제품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러한 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노력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0년 미국 의회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즉, 동 법안에 분쟁광물의 내용을 다루는 “1502조”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상원은 1502조를 통해 해당 분쟁지역에서 민간인 살상 등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는 무장세력들이 자원의 유통경로를 장악하며 자신들의 무기고를 채우는 자금줄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즉, 1502조의 목적은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제조업체와 가공업체들의 가공업체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억제하는 데 있다.

동 조항은 흔히 3TG라고 불리는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을 제외한 다른 금속과 광물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분쟁광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 및 시행 규칙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근국가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용도 및 콩고민주공화국 생산 비중

금속	수요 산업	주요 용도	상업 광물	콩고민주공화국 생산 비중 (%)
주석 (Tin)	- 전자 - 자동차 - 공업기계 - 건설	- 파이프 및 회로 연결 땀납 - 주석 도금 철 - 합금석 (청동, 황동, 백랍)	주석	5%
탄탈륨 (Tantalum)	- 전자 - 의료기계 - 공업장비 및 기계 - 항공우주	- 주요 전자 산업의 축전기 - 초경 공구 - 전투기 부품엔진	콜탄 (콜럼브식-탄탈석계)	15-20%
텅스텐 (Tungsten)	- 전자 - 조명 - 공업기계	- 금속선 - 전극 - 전기 접점 - 난방장치 - 용접	철망간 중석, 회중석, 철중석, 망가니즈 중석	1%
금 (Gold)	- 보석 - 전자 - 항공우주	- 보석 - 전기 도금 - IC 배선	다른 형태의 광물	0.5-2%

적용 범위 및 영향

동 조항은 기업들이 분쟁광물을 제조공정이나 공급사슬 상에서 사용할 경우 그 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주변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10-K, 20-F, 40-F 연차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의무는 휴대폰, 전투기,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동 조항이 미국 상장사 과반수 기업들과 수천 개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 분쟁광물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상장기업
- 자가상표(private-label) 제품 또는 OEM 제품을 판매하는 상장 소매기업: 단, 다른 업체 브랜드 제품만 판매하는 소매기업은 보고 의무가 없다.
- 상장된 미국 기업의 공급사슬 내에 종사하는 사기업 또는 외국기업: 증권거래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임무는 없으나 자신의 고객들에게는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자체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유통기업: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장기업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실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의무 사항

제품의 생산에 분쟁광물을 사용하거나 분쟁광물이 포함된 제품을 이용해 다른 제품을 생산한 상장 기업들은 분쟁광물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분쟁광물이 최종 생산제품에 드러날 필요는 없다.

동 조항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가지 단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구분	의무 사항
Step 1	주석 및 텅스텐, 탄탈륨, 금이 생산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Step 2	사용된 광물의 원산지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근국가인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이 원산지가 아니라면 그 광물의 원산지 확인 방법을 보고해야 한다.
Step 3	해당 광물의 원산지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인근국가이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면, 기업들은 공급사슬을 추적하고 실사 노력에 대한 독립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광물의 원산지와 무관하게 1단계 및 2단계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원산지로 밝혀지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3단계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나 회사 웹사이트에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법은 기업들에게 분쟁광물의 조달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안의 의도는 기업들에게 공개적인 압력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무장단체들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다.

진행 일정

2010년 12월23일, 증권거래위원회는 분쟁광물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했다. 최종안 발표 일정은 2011년 4월15일로 예정되었으나 2011년 8월과 12월 사이로 연기되었다. 향후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최종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 사업보고서를 2013년 초에 제출)

연방 및 주정부의 대응

2011년 4월12일, 캘리포니아 상원위원회는 콩고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분쟁광물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과 계약할 수 없게 된다.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와 플로리다의 피터스버그는 분쟁광물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NGO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도 전례를 따르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II. 산업계의 대응

법안 시행의 어려움(Challenges to Implementation)

한편, 1502조의 의무사항은 매우 복잡하고 애매한 면이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2011년 말까지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 **적용 범위의 모호성:**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search” 나 “substantial to the functionality”와 같은 용어들은 상당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또 소매업자(retailer)에 대한 적용범위도 모호한데 특히 재활용 물질에 대한 실사도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공급사슬 파악의 어려움:** 오늘날의 공급망은 글로벌화 되어 있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광석이 최종 제품으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최소 10번 이상 중간단계를 거친다.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시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노력은 공급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특히 기업들이 원재료 조달을 위해 유통업체나 멀티 서플라이어(multi-supplier)를 이용할 경우 공급망은 더욱 복잡해진다. 공급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조차도 전체 공급사슬을 파악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
- **감사 기준의 불명확성:**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상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안한 조항에는 분쟁광물 보고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미국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의견 중 새로운 법안 시행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지만, 기업과 무역단체, 그리고 KPMG를 포함한 전문서비스 기관들은 동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가 모든 요건을 명확하게 해석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법적 요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할 것이고 수용가능한 해결법을 찾는 것은 산업계에 달려있다.

개별 기업들의 대응

분쟁광물 조항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부터 일부 하이테크 기업들은 이 이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Intel, HP, Apple, Dell, Motorola, Microsoft, Nokia 등은 “콩고 분쟁 광물과 관련 없도록(DRC conflict free)” 자체 실사를 시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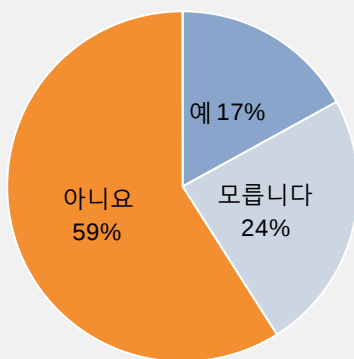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KPMG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련 산업 응답자의 17%만이 분쟁광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답했다.

분쟁광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자와의 계약에도 적절한 용어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KPMG 설문조사에 따르면 10% 미만의 응답자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기업들은 대부분 하이테크산업 또는 이에 대한 공급업체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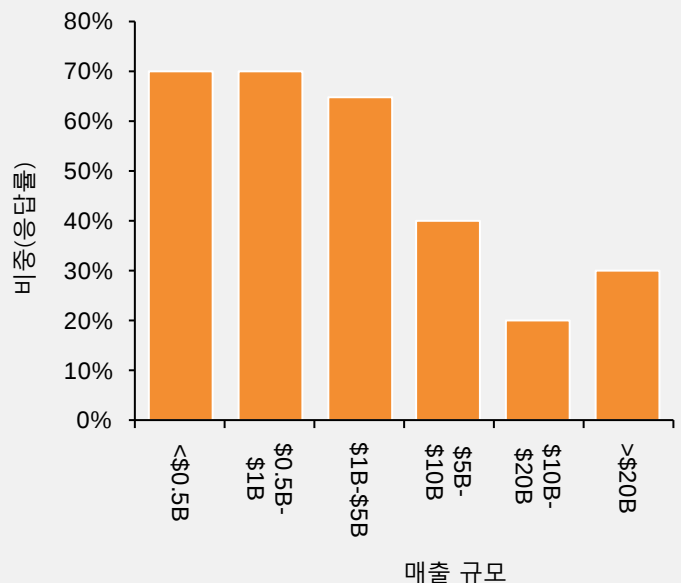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 해당 산업의 50%가 조금 넘는 기업들만이 분쟁광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5%만이 조항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쟁광물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 현황 (KPMG 설문조사)

분쟁광물규제 대응 전략 수립 여부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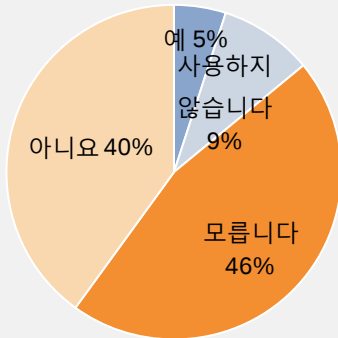
규제 대응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분포 (매출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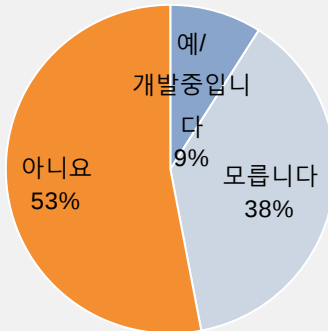
Source: KPMG Conflict Minerals Survey, 2011

공급업체 계약 관련 정책

공급업체 계약서에 분쟁광물 용어 포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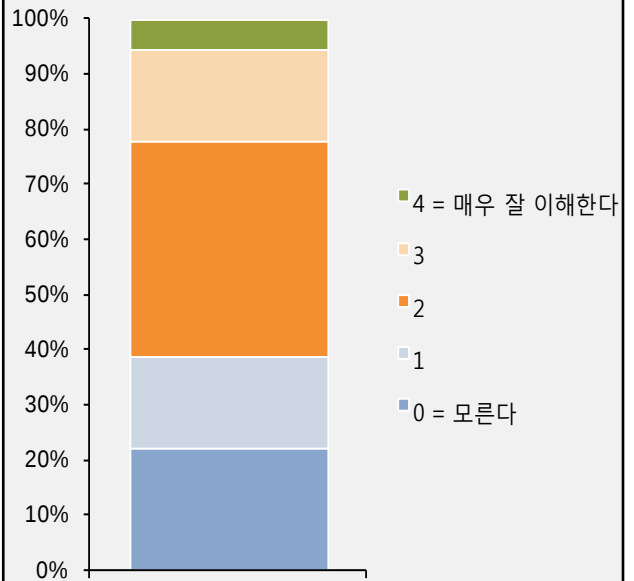


공급업체 계약 관련 정책 수립 여부



Source: KPMG Conflict Minerals Survey, 2011

분쟁광물규제 법안에 대한 인지도



Source: KPMG Conflict Minerals Survey,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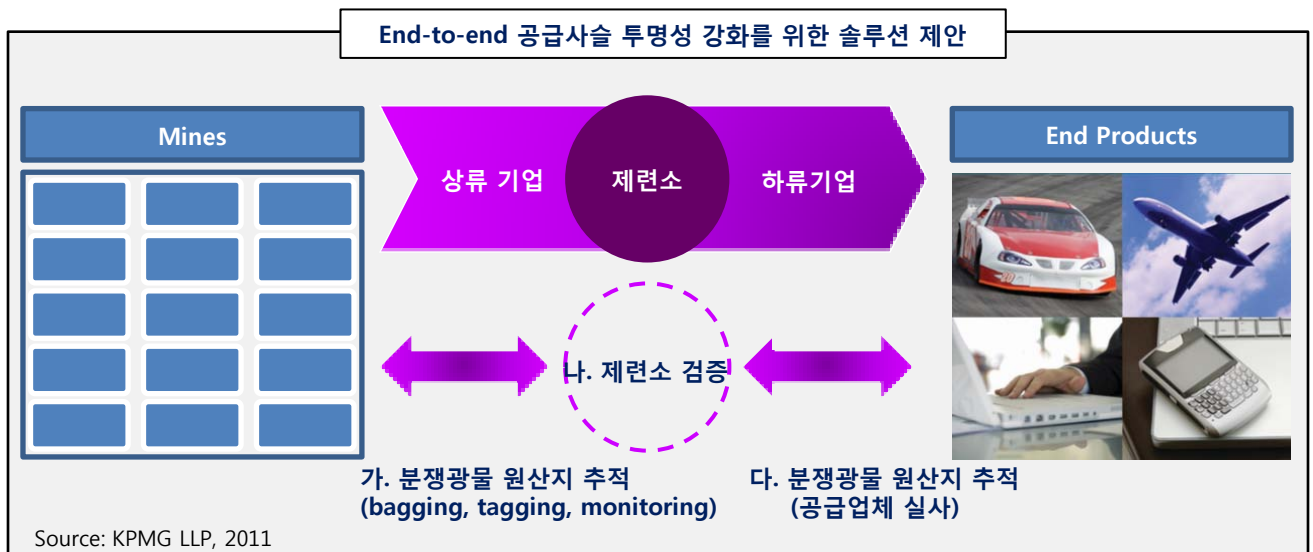
산업 기반의 솔루션

일부 산업단체들은 잠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 서 왔다. OECD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기업들에 적용가능 하도록 발전시켜왔다. OECD가 제시한 분쟁광물 공급망 실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확고한 회사 관리시스템 구축
- 공급사슬의 위험 파악 및 평가
- 인지된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및 실행
- 독립된 제 3자 감사
- 공급사슬 실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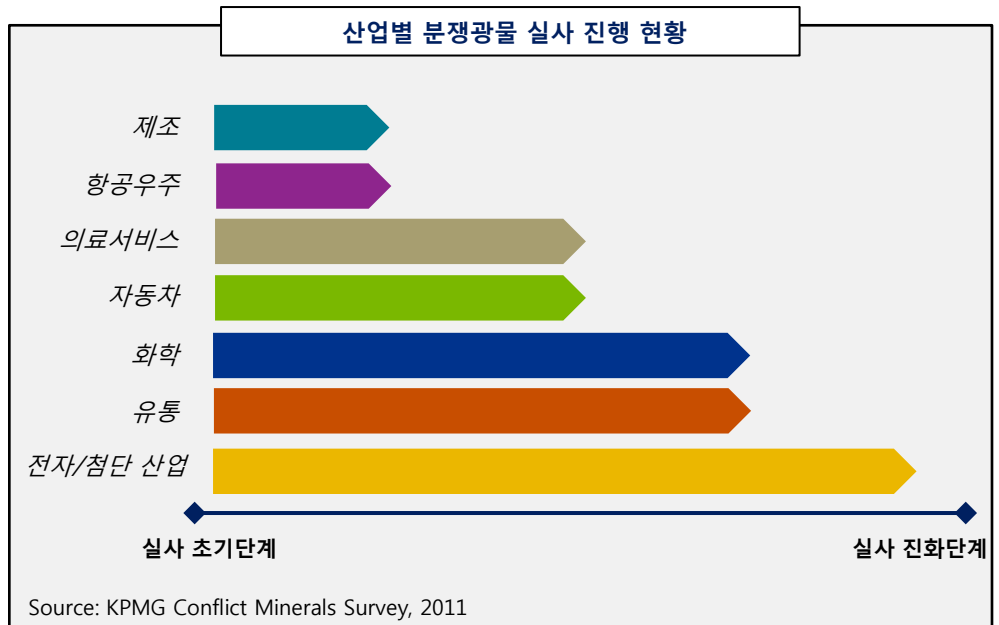
OECD 가이드라인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으나 어떻게 공급사슬 실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이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과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는 Conflict Free Smelter(CFS) 프로그램을 개발 과정 중에 있다. 개발이 성공한다면, 실사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3TG 공급사슬을 제련소까지 추적하면 된다. 광산의 출처를 조사하는 일과 공급라인에 “오염된” 광물이 없게끔 하는 일은 제련소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8월3일 EICC와 GeSi는 “실사 보고 견본(Due Diligence Reporting Template and Dashboard)”을 배포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공급업체의 금속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표준 설문지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협(AIAG: the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와 항공우주산업협회(AIA: the Aerospace Industry Association)는 세미나와 온라인 회의를 통해 회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Chrysler, Ford, GM, Honda of America, Nissan North America, Toyota North America 등 6개 자동차기업들은 2011년 4월19일 자동차산업협회를 통해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분쟁광물규제법의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산업별 분쟁광물 규제 대응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III. KPMG's Approach 분쟁광물규제 대응 프로세스

KPMG는 과거 실사 경험과 규제 요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간소한 절차를 개발했다.

KPMG 분쟁광물규제 대응 프로세스
▪ 제품 생산 및 조립 단계에서 3TG 분쟁광물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3TG 광물의 공급업체를 파악한다
▪ OECD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 증권거래위원회 요건에 부합하는 공개 성명을 준비한다
▪ 분쟁광물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할 제 3자를 개입시킨다
▪ 연간 업데이트를 위해 프로세스를 제도화한다

KPMG는 미국 소재 글로벌 전자업체와 전세계 부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프로젝트 중에 정보의 불완전성,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불일치, 내외부 프로세스 갭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2011년 연말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수립되었다. 이 작업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 공급망 실사 모범사례, EICC-GeSi 설문항목 등이 참고되었다.

Case Study

KPMG는 3,000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가진 미국 소재 글로벌 제조업체가 분쟁광물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감사 가능한(auditable)”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작업을 지원했다.

동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미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회사 전반적인 리스크 프로세스(내부감사와 외부감사측면)를 통합하면서 벤더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해 가치사슬 안정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Getting Started

회사는 분쟁광물 규제 법안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법률, 투자자관계, 조달, 사회적 책임, 공급망, 변화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포함되었다.

Compliance Strategy

프로젝트 팀은 3TG 광물을 사용하는 공급업체들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메커니즘은 KPMG의 방법론과 틀이 일부 사용되었다. 공급업체 정보는 분쟁광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로 변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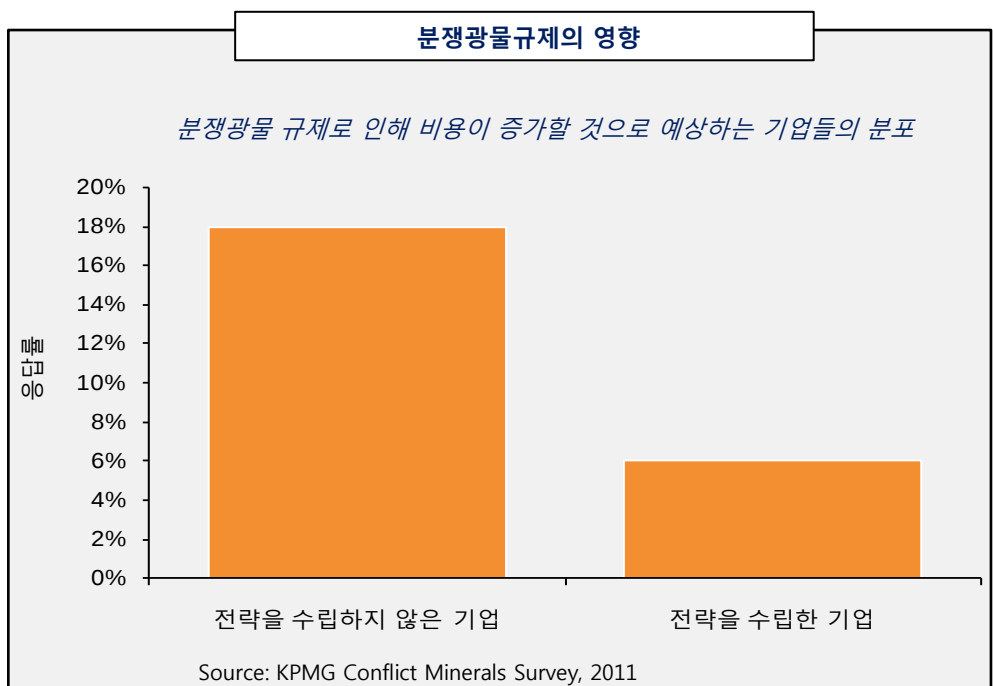
Looking for Opportunities beyond traditional compliance

결국 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분쟁광물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공급망 비용 감축과 통합을 위한 기회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독점 공급업체로 인한 위험 요인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Source: KPMG Public Policy Alert, July 2011, “Legislative complexity challenges traditional business and compliance strategies.”

IV. 장기적 비용과 편익 기업들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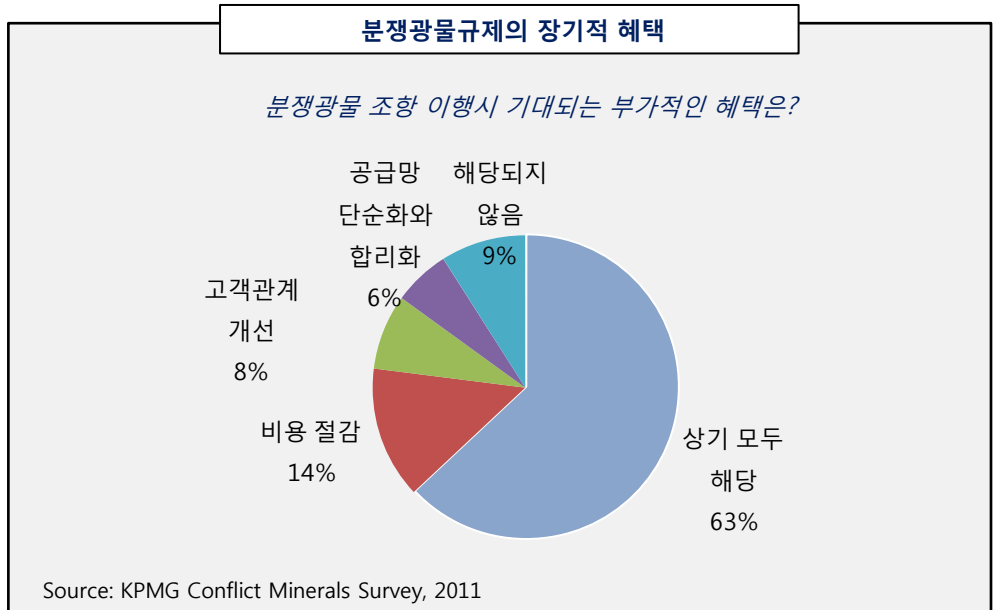
일부 산업단체들은 새로운 법안 시행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KPMG의 설문조사 결과, 분쟁광물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들이 전략을 수립한 기업들에 비해 비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률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공급사슬 실사를 통해 기대되는 부가적 편익

최근 분쟁광물에 관한 KPMG Webcast에는 500개 이상의 다양한 기관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에게 분쟁광물에 대한 공급사슬 실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9% 만이 “전혀 없다”며 단순히 보고에 대한 부담으로 간주했다. 다수 기업들은 공급사슬 실사를 통한 잠재적 혜택으로 공급사슬 단순화와 합리화(6%), 비용 절감(14%), 고객관계 개선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8%) 등을 꼽았다.

산업계 참가자들은 이 법안이 환경, 지속가능성, 근로기준, 공중보건, 안전, 윤리 등의 사회적 책임 이슈에 대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신매매와 노예 노동을 제제하는 “캘리포니아 공급사슬 투명성 법안(The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Act)”이 좋은 사례이다. 분쟁광물의 확고한 처리방법이 다른 규제에 대응하는 표본이 될 수 있다.



V. 결론

도드-프랭크 법안의 분쟁광물 조항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기업들이 3TG 광물의 출처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 새로운 법안의 필수조건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기업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슈들을 명확히 해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도적인 기업들과 산업단체들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들의 공급사슬 상에 분쟁광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미 작업을 시작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경험은 다른 기업들이 분쟁광물 전략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사 과정을 착수하는데 촉매 작용을 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2011년 7월15일 공식 발표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메시지는 기업들이 “실행 가능하고 분쟁광물이 없는 공급망을 보장하도록 즉시 실사를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박재우

삼성KPMG 경제연구원, Partner

T: 02-2112-0455

E: jaewoopark@kr.kpmg.com

윤성빈

삼성KPMG 경제연구원, Senior Manager

T: 02-2112-7448

E: sungbinyoon@kr.kpmg.com

이파라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alyst

T: 02-2112-0449

E: farrahlee@kr.kpmg.com

© 2011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